

다대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5. 13
제안자 : 이상은의원의외 13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을 위해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 7인 이내를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5명 이내
- 나. 위원선임 : 관할 동에 위원을 추천 받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활동기간 : 제101회 임시회(2002. 5. 23, 1일간)

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
- 다.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 제17조 제2항
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